

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36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	: 1999. 3. 16	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	: 1999. 3. 17	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	: 1999. 3. 24	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현행 조례중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일부조항과 맞지않아 이를 보완하고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은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 공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 (안 제9조)
-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지정 (안 제9조의 2)
-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및 매각대상 등을 규정 (안 제9조의3)
-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연 5퍼센트의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의 경우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 의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 등으로 규정함. (안 제20조의1항)
-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연 8퍼센트의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(안 제21조2항)
-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에 연 4퍼센트의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(안 제21조4항)
-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산정 (안 제22조의8항)

-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대부·임대 또는 사용허가시 임대료·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 신설 (안 제22조의2)
- 대부료 등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 (안 제25조)
- 폐천부지 매각면적을 상향조정 (안 제38조의2)
-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면규정 신설 (안 제38조의4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된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, 외국인 투자 및 투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국인의 투자범위, 대부료 납부 방법 및 면제범위, 수의계약, 매각대금 방법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
-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표준안('98. 8. 25)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군내 자본 및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군관내 외국인 투자기업체 수는
- 답 : 현재는 없으나 향후 관련 조례제정시 유치될 것으로 예상.
- 문 : 농업기술센터 관사 관리계획은
- 답 : 본 조례제정 후 관사 임대계약 해제할 것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3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